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의 안 번 호 6091

제안연월일: 2024. 12.

제 안 자: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| 의안명 | 의안번호 | 대표발의 | 발의일 | 심사경과 |
|--|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|---|
| 소재·부품 ・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급화 특별 안정화 특별 입부개정 법률안 | 2200203 | 조지연의원 | 2024.6.7. | -제417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산업통상 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('24.8.19.) 상정 후 제안설명, 검토보고,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 회부 -제417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산업통상 자원특허소위('24.8.20.) 상정, 축조심사 및 의결(대안반영폐기) |
| | 2201140 | 이재관의원 | 2024.6.28. | - 「국회법」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 회 직접 회부('24.8.19.) -제417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산업통상 자원특허소위('24.8.20.) 상정, 축조심사 및 의결(대안반영폐기) |
| | 2202094 | 이철규의원 | 2024.7.22. | -「국회법」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('24.8.19.) -제417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('24.8.20.) 상정, 축조심사및 의결(대안반영폐기) |

- 가. 제417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(2024. 8. 20.)에서 위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,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,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·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.
- 나. 제417회 국회(임시회)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(2024. 8. 21.)에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산업통상 자원특허소위원회가 마련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.

2.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2023년 5월 소재·부품·장비 경쟁력 강화 외에도 상시화된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안정품목 선정및 공급망안정사업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는 등 소재·부품·장비산업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확대·개정되어 2023년 12월 시행되었음.

그러나, 현행법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확대·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특별회계는 소재·부품·장비경쟁력강화를위한특별회계로 규정되어 있어, 동법의 개정취지에 맞추어 특별회계를 소재·부품·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확대·개편하고 이에 맞추어 공급망 안정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(안 제68조).

또한, 현행법은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규정하고 있으나, 이를 5년 더 연장하여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 지속 추진하고 이를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지속적으로기여하고자 함(안 법률 제16859호 소재·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).

참고사항

- 가. 이 법률안은 이철규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2096호), 이철규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)」(의안번호 제2095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- 나. 이 법률안은 「국회법」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 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.

법률 제 호

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 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8조의 제목 "(소재·부품·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설치)"를 "(소재·부품·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의 설치)"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"소재·부품·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"를 "소재·부품·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"로 한다.

제70조제2항제1호자목 중 "강화"를 "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"로 한다. 법률 제16859호 소재·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 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"2024년 12월 31일"을 "2029년 12월 31일" 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개 정 안 혀 제68조(소재·부품·장비경쟁력 | 제68조(소재·부품·장비경쟁력 강화특별회계의 설치) 소재·부 |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 품·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 계의 설치) -----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 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소재・부품・장 ----- 소재·부품·장비 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(이하 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<u>회계</u>----. "회계"라 한다)를 설치한다. 제70조(세입·세출) ① (생 략) 제70조(세입·세출) ① (현행과 같음)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출 연 • 투자 • 보조 또는 융자 가. ~ 아. (생 략) 가. ~ 아. (현행과 같음) 자. 그 밖에 소재・부품・장 ----- 강화 및 공 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 하여 필요한 사업 급망 안정화---2. ~ 4. (현행과 같음) 2. ~ 4. (생 략) 법률 제16859호 법률 제16859호 소재·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부칙 제2조(특별회계의 유효기간) 제68 제2조(특별회계의 유효기간) ---

| 조부터 제73조까지의 개정규정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은 <u>2024년 12월 31일</u> 까지 효력 | <u>2029년 12월 31일</u> |
| 을 가진다. | <u>.</u> |